
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6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선교 · 김종양
이상휘 · 송석준 · 신성범
김정재 · 김용태 · 박성훈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,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.

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,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,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·외국어,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1호 및

제6조제2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용수(湧水)”를 “쏟는 물”로, “탄진(炭塵)의”를 “석탄가루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수갱(豎坑)”을 “수직갱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)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낙반(落盤), 붕괴, <u>용수(湧水)</u> , 가스의 누출, 가스· <u>탄진(炭塵)</u> 의 폭발, 자연발화, 화재의 방지 및 통기(通氣)의 유지 2. ~ 7. (생략) ② (생략)	제5조(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솟는 물</u> ----- ----- <u>석탄가루</u> <u>의</u> ----- ----- 2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광산근로자의 의무) ① (생략)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(便乘)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<u>수갱(豎坑)</u> , 40도 이상의 사갱(斜坑)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·파이프 등의 검사·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	제6조(광산근로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수직갱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· ④ (생략)	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